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태성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111
----------	------

발 의 년 월 일 : 2022년 03월 10일

발 의 자 : 이태성 의원(1명)

찬 성 자 : 김정태, 김평남, 김혜련,
김희걸,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성흠제, 송아량,
이경선, 이정인, 장상기,
전석기, 최웅식, 황규복
의원(15명)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정부보다 먼저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정부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부 용어와 규정이 법률과 달라 조례의 적용과 해석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 이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위원회 관련 규정 등을 법률과 부합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필수노동자”와 “필수업종”의 정의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변경함(안 제2조).
- 나. 조례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3조).
- 다.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필수업종”을 “필수업무”로 변경함(안 제4조, 안 제7조).
-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 마.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요건과 수립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과 부합하도록 수정함(안 제6조).
- 바. 위원회 심의·자문 사항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에 부합하도록 수정함(안 제9조).
- 사.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5명으로 하고, 위원장을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며, 위원의 자격요건을 추가함(안 제10조).
- 아. 위원회 회의 소집 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타 : 없음.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

3. “필수노동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필수업무종사자

나.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필수업종의 업무”를 “필수업무”로 한다.

제5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이 조례에 따른 보호·지원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발생에 따른”을 “발생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원 사업 추진”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필수업종의 지정”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으로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필수업종”을 “필수업무”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필수노동자”를 “필수노동자에 대한”으로, “지원에 필요한”을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1. 시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시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노동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시의 필수노동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제10조(중전의 제9조)제1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노동조합 또는 단체,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4.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중전의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시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다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필수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p> <p>3. “필수업종”이란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p> <p>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시민의 생명·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시민과 필수적으로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p> <p>제3조(적용대상)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난상황 및 특성, 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필수업종에</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p> <p>3. “필수노동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필수업무종사자 나.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p> <p><삭 제></p> <p>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p>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재난 상황에서 필수업종의 업무가 중단없이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신설>

제5조(지원계획 등) ① 시장은 재난 발생에 따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필수업종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4. 필수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생략)

③ (생략)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재 필수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 (생략)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필수업무-----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이 조례에 따른 보호·지원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 등) ① ----- 발생시 -

-----.

② -----
-----.

1.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 지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실태조사) ① -----

----- 필수업무-----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신 설>

제10조 ~ 제12조 (생략)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

1. 시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시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노동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시의 필수노동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 필수노동자에 대한 -----
-----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

----- 15명 -----
-----.

② ----- 시장-----
-----.

③ -----
----- 시장-----
-----.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노동조합 또는 단체,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4.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 제13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④ (생략)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생략)

제15조(시행규칙) (생략)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시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다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협력체계 구축)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6조(시행규칙) (현행 제15조와 같음)

문서번호	2022030400000004
------	------------------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이태성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류동균 주무관
접수일 : 2022.03.04	
회신일 : 2022.03.07	내용문의 : 02-2180-7952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0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위원회 구성을 10인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증원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9,000천원(연평균 1,800천원)

○ 추계의 전제

- 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개정에 따라(10명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개정) 서울시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위원회 위원이 15명인 것으로 하되 이 중 위촉직 위원은 10명으로 함(기존 위원회에서 늘어난 부분만 추계). 연 4회 개최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추계함
- 비용은 2023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9,000천원(연평균 1,8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세입	-	-	-	-	-	-
	소계(a)	-	-	-	-	-	-
세출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위원회(안 제10조)	1,800	1,800	1,800	1,800	1,800	9,000
	소계(b)	1,800	1,800	1,800	1,800	1,800	9,000
	총비용(b-a)	1,800	1,800	1,800	1,800	1,800	9,000

- 서울시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위원회 총 운영비 ≍ 9,000천원

- 산출방식 : 연간(2023~2027) 비용의 합산 : 1,800천원 × 5년
- 연간 위원회 운영비 ≍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 연간 위원회 업무추진 경비
≍ 1,200천원 + 600천원
≍ 1,800천원

·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 위촉직 위원 수 × 1인당 회의참석 수당 × 1년간 회의개최 횟수
= (10-8)명 × 150,000원 × 4회
= 1,200천원

※ 참석수당 지급기준은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기본료 10만원, 2시간 초과 비용 5만원 등 총15만원 기준임

· 연간 위원회 업무추진 경비 = 전체 위원 수 × 1인당 업무추진비 단가 × 1년간 회의개최 횟수
= (15-10)명 × 30,000원 × 4회
= 600천원

※ 1인당 업무추진경비 단가는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3만원으로 가정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조도형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무관 류동균

☎ 02-2180-7952

e-mail : rooster72@seoul.go.kr